

# 대한민국 재외선거 - 이렇게 합니다.



제공일자 2010. 7. 7.

총 1면

www.nec.go.kr

☎82-2-503-0648

FAX82-2-504-5350

## 「공직선거법」에서 정의하는 선거운동이란?

- ◎ 선거운동”이란 자신이 당선되기 위한 또는 다른 사람을 당선시키기 위한 모든 행위와 다른 사람을 떨어뜨리기 위한 모든 행위를 말합니다.

선거운동란 당선되거나 되게 하거나 되지 못하게 하기 위한 행위를 말합니다(공직선거법 제 58 조제 1 항) 즉, 특정 후보자의 당선내지 득표나 낙선을 위하여 필요하고도 유리한 모든 행위로서 당선 또는 낙선을 도모한다는 목적의사가 객관적으로 인정될 수 있는 능동적.계획적 행위를 말합니다.

☞ 선거운동은 후보자등록마감일의 다음날부터 선거일 전일까지만 할 수 있음

※ 선거운동으로 보지 아니하는 행위

### ▶ 선거에 관한 단순한 의견개진 및 의사표시

계모임.초상집 등에서 선거에 관한 얘기가 화제로 떠올라졌을 때 그 화제에 끼어들어 “인품이나 경력으로 볼 때 ○○가 되었으면 좋겠어, ☆☆는 떨어져야 돼.....” 등의 얘기

### ▶ 정당의 후보자 추천에 관한 단순한 지지.반대의 의견개진 및 의사표시

정당의 후보자추천에 관한 단순한 지지.반대의 의견을 기자회견을 통하여 외부에 공표하거나 자신의 인터넷 홈페이지에 게시하여 두는 행위

### ▶ 통상적인 정당활동

정치적 주장과 정책추진 및 국민의 정치적 의사형성을 위한 정치활동, 정당의 당세 확장을 위한 정상적 활동, 정책의 보급.선전을 위한 활동

### 재외선거 홈페이지 오픈 안내

중앙선거관리위원회는 재외국민의 재외선거 관련 정보 접근성을 높이기 위하여 2010. 7. 7. 재외선거 홈페이지를 오픈하였습니다. 많은 관심과 참여 부탁드립니다.